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244

발의연월일: 2024. 8. 27.

발 의 자:김한규·장철민·신정훈

이재관 • 정동영 • 박희승

김 유 · 서미화 · 모경종

이연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촬영물 또는 영상물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하거나 이를 반포한 자 또는 허위영상물을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할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이를 반포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경우 이를 반포·판매·임대한 자를 처벌함과 동시에 이를 구입하거나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토록 한 것과 달리 허위영상물의 경우에 는 소지 등을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형평에 맞지 않다는 의 견이 있음.

이에 허위영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14조의2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① ~ ③ (생 략)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
	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u>④</u> (생 략)	<u>⑤</u> (현행 제4항과 같음)